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1. 2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위원회 (2008.11. 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박도식

### 가. 제정이유

우리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나. 주요 제정 내용

#### 1)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2) 신고기한·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및 별지 서식)

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 100만원 이내

나)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근거가 된 경우 : 50만원 이내

다) 그 밖에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20만원 이내(최저 10만원)

6)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건은 구소속 공무원과 마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하였음.

○ 안 제3조에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 수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향응행위, 부당이익 취득행위, 구 재정손실행위,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신고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방법, 신고자 등의 보호,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4조에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제8조 별표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소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안에 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